남원시 공고 제2026 - 2373호

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

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남 원 시 장

1. 사업개요

□ **(사업목적)** 고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□ **(사업근거)** 「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 제1조(목적), 제12조(기업 활동 지원)

□ **(지원대상)** 사업 공고일 기준, 본사·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'제조업'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**수출**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

* 직접지원 제한업종: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(근거: WTO 농업협정)

□ **(지원한도)** ~~기업별 최대 10,000천원~~ **※ 예산 잔액(4,729천원) 범위 내**

2. 지원내용

□ **지원항목**

○ 국외운송비: EMS, DHL 등 국제특송, 해상·항공 물류비

※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, 견본품(샘플) 운송비 포함

○ 국내운송비: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(운임)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

※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, 세금계산서,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

○ 창고보관비: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

□ **(지원기준)** 증빙서류로 각 지원항목이 증빙 가능한 경우 비용 지원

□ **(선정방법)**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

※ 동점자 우선순위 ❶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 ❷ 연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

3. 제외대상

① 비제조업(물류업, 택배업, 세탁업, 레미콘/아스콘/골재 등)
② 모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(제조, 취급 기업 포함)
③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, 사실상 휴·폐업으로 인정된 기업
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가. 국세, 지방세 등 체납 기업
나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기업
⑤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
⑥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
ex) 남원시 물류비 지원사업(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,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) 포함
⑦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(신청기간)** 2026. 10. 28.(수) ~ 11. 5.(목)

□ **(신청방법)** 방문 신청(남원시청 기업정책과, 3층)

□ **신청서류**

①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 1부 **※ 법인기업 : 법인인감 날인 / 개인기업 : 개인인감 날인 원칙**
② 사업자등록증 1부
③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④ 2025 수출실적증명서 :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
⑤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(계별원장 포함)
⑥ 2025년 수출 물류비 증빙서류
⑥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(법인 혹은 대표자)
⑦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□ 증빙서류

수출 물류비 증빙 서류 목록		* 수출 1건당 증빙서류 1세트씩 제출할 것
수출 증빙	수출신고필증	· 갑지, 을지 모두 제출
해외 운송 (견본품 포함)	B/L(해상) 또는 AWB (항공화물운송장)	· Unipass에 수출신고번호로 조회시 표기되는 B/L번호와 일치 필수
	물류사 인보이스 (특송 영수증)	· Unipass에 수출신고번호로 조회시 표기되는 B/L번호와 일치 필수 · EMS 등 국제 특송의 경우, 물류사 인보이스나 EMS 영수증
	전자세금계산서	· 물류사 인보이스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, 소명자료 모두 첨부 ·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계산서로 제출(필수)
	이체확인증, 외화송금증, 카드영수증 등	· 전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지출증빙
국내 물류비	표준재무제표	· `25년 표준재무제표에 따른 국내 물류비 증빙
해외 창고 보관	창고이용계약서	· 계약 주체, 계약 기간, 보관료 요률
	인보이스	· 월별/분기별 보관료 내역, 청구 금액, 창고 위치 등
	외화 송금 확인증 또는 보관영수증	· 실제 송금액(금액 일치 여부), 수취인(창고주)
	입고확인서 또는 재고 현황표	· 실제 보관 여부 확인

※ 영어 외 제3외국어의 경우, 국문 번역 요약본 제출 필수

□ 유의사항

❍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,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

❍ 제출한 서류(증빙)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
❍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**(신청문의)**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(☎063-620-6645)

[서식 1]

2026년 남원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

기업 정보	기 업 명			업종(분류번호)	
	사업자등록번호			대 표 자	
	법인등록번호			전 화	
	주 소				
	2025년 매출액			2025년 수출액	
	담 당 자	성 명		부서 / 직위	
		휴대전화		이 메 일	
수출계약정보 ①	수 출 국 가			수 출 품 목	(국문)
	H S 코 드				(영문)
	수 출 형 태	*해상, 항공, 국제특송*		계 약 조 건	*FOB, CIF 등 기재*
	물 류 형 태	*FCL, LCL, 항공물류*		선적항(공항)	*부산, 인천 등 기재*
	수 출 일 자			수 출 액(원)	*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*

2025년 수출물류비	
항 목	**금 액 (원)**
내 륙 운 송 비	*표준재무제표로 확인*
국 제 특 송 비(DHL, EMS 등)	
해 상 운 임 / 항 공 운 임	/
창 고 보 관 비	
합 계(ⓐ)	
보조금 신청액 (ⓐ의 50%, 1,000만원 이내로 기재)	**원**

「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남 원 시 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사업자등록증 1부
2. 통장사본 1부
3. `25년 표준재무제표 1부(계별원장 포함)
4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5. 청렴이행서약서 1부
6. 202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실적 증빙자료 1부
7. 수출물류비 및 창고보관비 증빙서류 각 1부
   - 수출계약서,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, 운송사 발급 세금계산서, 운송사 발급 인보이스, 창고보관영수증 등

(뒷면)

수출계약정보 ②	수 출 국 가		수 출 품 목	(국문)
	H S 코 드			(영문)
	수 출 형 태	*해상, 항공, 국제특송*	계 약 조 건	*FOB, CIF 등 기재*
	물 류 형 태	*FCL, LCL, 항공물류*	선적항(공항)	*부산, 인천 등 기재*
	수 출 일 자		수 출 액(원)	*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*
수출계약정보 ③	수 출 국 가		수 출 품 목	(국문)
	H S 코 드			(영문)
	수 출 형 태	*해상, 항공, 국제특송*	계 약 조 건	*FOB, CIF 등 기재*
	물 류 형 태	*FCL, LCL, 항공물류*	선적항(공항)	*부산, 인천 등 기재*
	수 출 일 자		수 출 액(원)	*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*
수출계약정보 ④	수 출 국 가		수 출 품 목	(국문)
	H S 코 드			(영문)
	수 출 형 태	*해상, 항공, 국제특송*	계 약 조 건	*FOB, CIF 등 기재*
	물 류 형 태	*FCL, LCL, 항공물류*	선적항(공항)	*부산, 인천 등 기재*
	수 출 일 자		수 출 액(원)	*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*
수출계약정보 ⑤	수 출 국 가		수 출 품 목	(국문)
	H S 코 드			(영문)
	수 출 형 태	*해상, 항공, 국제특송*	계 약 조 건	*FOB, CIF 등 기재*
	물 류 형 태	*FCL, LCL, 항공물류*	선적항(공항)	*부산, 인천 등 기재*
	수 출 일 자		수 출 액(원)	*수출신고필증 수출액 기재*

[서식 2]

청 렴 이 행 서 약 서

(보조사업명 :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)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청에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지급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, 귀 남원시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남원시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지금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규정> (지방보조금법 제 37조 ~ 제40조)

○ **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39조)**

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2. 제28조의4제2항1호(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·변경·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)를 위반한 자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3.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**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**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6년 월 일

기 업 명 :

대 표 자 : (인)

남원시장 귀하